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8. 25 선고 2021가단9567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

담당변호사 김준동, 홍성필, 김말금, 최단비, 이선영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8. 11.

판 결 선 고 2022. 8. 25.

주 문

1. <별지>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9. 11. 27. 체결된 소유권변경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서로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9. 11. 29. 접수 제146687호로 마친 소유권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.

- ①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전주지방법원에 피고 C 등을 상대로 위 법원 2011가단29828로써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 위 법원은 2012. 1. 6. 위 사건에 관하여 ‘위 사건의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사건의 원고에게 529,997,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. 9. 30.부터 2007. 1. 31.까지는 연 8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’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은 피고 C에 대하여 2012. 2. 24. 확정되었다.
- ② 피고들은 2019. 11. 11. <별지>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2019. 10. 15. 매매(거래가액 380,000,000원)를 원인으로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- ③ 피고들은 2019. 11. 29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1. 27. 변경계약(이하 ‘이 사건 변경계약’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피고들의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는 소유권변경등기(이하 ‘이 사건 변경등기’라 한다)를 마쳤다.
- ④ 원고는 위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29828 판결에 기한 채권을 승계하였다.

2.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 B은,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인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민법 제406조1) 제2항 전단이 정한 제척기간 1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. 6. 15. 이 사건 변경계약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고, 원고가 이보다 일찍 이를 인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. 이 사건 소가 2021. 9. 3.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, 위 날이 위 2021. 6. 15.로부터 1년 내임은 역수상 명백하다.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위 제척기간 1년을 초과하여

제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,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.

그리고 피고 B은 자신에게 피고 적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의 소인바, 위 피고와 같은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것이 그 통상적인 형태이므로, 위 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대한 판단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원금만 529,997,607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고양시장, E은행, F은행, G은행, H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피고 C은 그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(190,000,000원 상당)과 합계 1,000만원이 조금 넘는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그 당시 위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.

그리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(민법 제272조 제1항 후문),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므로(같은 법 제273조 제1항), 합유자들 중 일부의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합유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 C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유를 합유로 변경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원고와 같은 피고 C의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를 해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다. 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취소하여 이 사건 변경등기 이전 상태를 회복하여야 한다.

4. 결론

그러므로 이 판결로써 이 사건 변경계약을 취소하고,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서로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 이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류승우

별지

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